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의 일환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사항을 정비하면서,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제2항)

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에게 장기연임을 통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심의의 공정성·객관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민간위원의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마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 폐지되는 내용으로 보조금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을 위한 관련사항 정비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보제공 요청 대상 추가(안 별표 4)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공익 직접직불금,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정보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표에서 제41호를 제44호로 하며, 제44호(중전의 41호)의 본문 중 “운영기관 협의회”를 “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에 제41호부터 제43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

4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 정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한다</u> . ③ ~ ⑤ (생략)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u>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
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
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
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
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

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
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
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
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는 의
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
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⑧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는 제7
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
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
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
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

<u>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u>	
[별표 4]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0조의5 관련)	
<u>< 신 설 ></u>	4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u>< 신 설 ></u>	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개발 정보
<u>< 신 설 ></u>	4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 관리 정보
41.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u>운영기관 협의회</u> 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4. 그 밖에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u>보조금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연 락 처	(044) 215 - 5374